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(조경태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789

발의연월일: 2025. 3. 11.

발 의 자:조경태·김예지·이헌승

김용태 · 서천호 · 김소희

우재준 • 고동진 • 서지영

송석준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산림청장으로 하여금 산불의 예방·진화, 산림병해충의 예찰·방제 등의 산림사업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산림항공기를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산림청에 따르면 2023년 5월 기준 산림항공기 48대 중 기령 20년을 초과한 경년항공기 비중은 68.8%(33대)이고, 30년을 초과한 산림항공기의 비중은 25%(12대)로 나타나 산림항공기의 노후화 문제가심각한 상황임을 알 수 있으며, 이는 산림항공기 안전사고 문제와도 직결된다고 할 수 있음.

실제 2022년 11월 산불 감시를 위해 비행 중이던 산림 헬기가 추락해 조종사 등 5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, 사고 헬기는 1975년 제작되어 47년이 경과한 노후 산림헬기인 것으로 확인되었음.

이에 산림항공기와 산림항공기의 장치 및 부품에 대한 기령 및 내

구연한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, 「항공안전법」에 따른 감항증명의 유효기간까지 산림항공기 또는 산림항공기의 장치 및 부품을 운영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, 산림항공기의 안전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(안 제50조의2 신설).

법률 제 호

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산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0조의2(산림항공기의 기령 등) ① 산림청장은 제50조제1항에 따른 산림항공기와 산림항공기의 장치 및 부품에 대하여 기령 및 내구연 한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.

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령 및 내구연한을 초과한 산림항공기 또는 산림항공기의 장치 및 부품을 운영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「항공안전법」 제23조제5항에 따른 감항증명의 유효기간까지는 산림항공기 또는 산림항공기의 장치 및 부품을 운영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현 행 <u><신 설></u>	제50조의2(산림항공기의 기령 등) ① 산림청장은 제50조제1항에 따른 산림항공기와 산림항공기의 의 장치 및 부품에 대하여 기령 및 내구연한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.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령 및 내구연한을 초과한 산림항공기 또는 산림항공기의 장치 및 부품을 운영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「항공안전법」 제23조제5항에 따른 감항증명의 유효기간까지는 산림항공기 또는 산림항공기 또는 산림항공기기의 장치 및 부품을 운영하거
	나 사용할 수 있다.